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대봉서한이다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첨자 서류검수 안내를 드리오니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기간

- 기간 : 2021. 12. 10(금) ~ 12. 17(금) 10:00 ~ 17:00
- 장소 : 침산동 서한모델하우스 (북구 침산동 156-18번지 / ☎ 322-4700)

■ 제출서류 [공통 서류(필수) 외의 서류는 해당자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1통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불가함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분리배우자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직계 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 기간은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11. 12) 까지 발급.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발급기간 : 모집공고일 로부터 최근 1년간)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미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제3자 대리 계약시		당첨자 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본인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외 대리 신청 및 계약 불가	

■ 유의사항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입주대상자의 자격검증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